36.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: 2018년 9월 21일

○ 제 안 자 : 김대현, 김병태, 김원규, 윤영애, 임태상, 전경원, 정천락 의원

O 회부일자 : 2018년 9월 28일

O 상정일자

 대구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18년 10월 10일)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대현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도시재생사업은 경제·사회·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단계에서 사업완료 이후, 유지·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.
- O 따라서,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확정 또는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,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O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,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며, 필요한 경우 도시 재생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제2항)

□ 참고자료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1 참조)

나. 관계 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-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전배운)
 - O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부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O 이는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10조,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「특정 성별영향평가」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.
 - O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.
 - 안 제9조 제2항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또는 승인 시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이때 주민의 성별·연령· 계층·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.
 - O 이번 조례안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성별·연령·계층·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명시화한 것으로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됨.
 - 나아가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도시재생의 방향 및 구체적 계획 수립 시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
 - O 없음
- 5. 토론요지
 - O 없음
- 6. 수정안 요지
 - O 없음
- 7. 심사결과
 - O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- 8. 소수의견 요지
 - O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
 - O 없음